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29 호 2022. 2. 10.(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3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4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5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3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85호[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86호[공고] .....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95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98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8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23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대안동 1041-1번지	하천의 명칭	○ 신명천
점용 내용	○ 콘크리트전주 설치	점용 면적	○ 일시: 0.70m <sup>2</sup> ○ 계속: 0.13m <sup>2</sup>
점용 기간	○ 일시: 2022. 2. 10. ~ 2022. 2. 11. ○ 계속: 2022. 2. 12. ~ 2026.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24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2. 9.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312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 당초 : 330m<sup>2</sup>
    - 변경 : 35m<sup>2</sup>
  - 나. 기 간 :
    - 당초 : 2017. 1. 1. ~ 2021. 12. 31
    - 변경 : 2022. 2. 9. ~ 2026. 12.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이\*순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로 105길 10\*동 80\*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2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2. 10.
2. 점용·사용의 목적 : 농기구 보관을 위한 공작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1215-23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20m<sup>2</sup>
  - 나. 기 간 : 2022. 2. 10. ~ 2026. 12.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윤\*욱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로24, \*\*아파트 30\*동 110\*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85호

## 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 1시간 감면 근거 마련
- 주차요금 비대면 자동결제 가능한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용자에 주차요금 감면 근거 마련
-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보조금 지원 등 관련 조항 신설

#### 2. 주요내용

- 스마트주차장,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개방주차장 용어 정의  
(안 제2조제3호~제5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 1시간 감면  
(안 제6조제4항제6호)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가입자에게 주차요금 감면(안 제6호제4항제13호)
- 개방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사항 등 신설(안 제16조~제25조)

### 3.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15항
-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교통행정과

2) 전화번호 : 052)241-7982, 팩스번호 : 052)241-79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개방주차장“이란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6호 중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하고, “최초 90분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를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개방주차장”으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개방주차장

제16조(개방주차장의 지정)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방주차장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것  
다만,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제18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 시설 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5. 관리주체 부담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21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중에서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22조(보조금의 반환)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24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보칙

별표 4의 제목 중 “(제16조 관련)”을 “(제26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설>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신청서

일반 현황	신청인(법인명)		신청년월일	
	건축물(주차장)명		연락처	
	주 소(도로명주소)			
주차장 현황	주차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옥내 (자주식       면), <input type="checkbox"/> 옥외 (자주식       면)		
	현재 운영형태	<input type="checkbox"/> 유료 <input type="checkbox"/> 무료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 <input type="checkbox"/> 무	관리인 배치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 <input type="checkbox"/> 무
	주차면수		개방면수	
	개방시간		개방요일	
지원 내용	지원신청 내용	(20면 이상일 경우 해당)		
	지원신청 금액			

위치도

「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lt;신설&gt;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일반 현황	신청인(법인명)				
	건축물(주차장)명		주차면수		
	주 소		무료개방 면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지원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 고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내역

### 1. 정산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100%)	( %)	( %)	( %)	( %)	( %)	( %)	( %)	( %)

### 2.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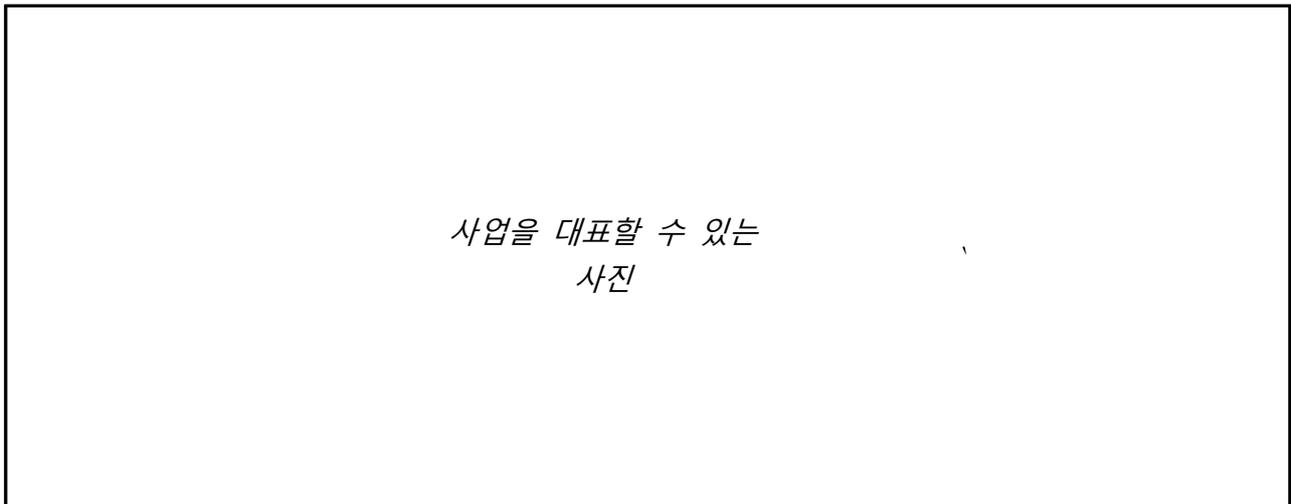
3. 자부담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합계							

※ 당초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의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함

4. 성과물 사진



※ 증빙서류

- ① 영수증(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 ② 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 ③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 (징수내용별, 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 ④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서류(공사 전·중·후 사진)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스마트주차장 “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u></p> <p>4. <u>“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u></p> <p>5. <u>“개방주차장” 이란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u></p>
<p>제6조(주차요금 등) ①~③ (생략)</p> <p>④ <u>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제6조(주차요금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1. ~ 5. (생 략)  
 6.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  
 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  
 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최  
 초 90분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 12.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4장 보칙

<신 설>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7. ~ 12. (현행과 같음)  
 13.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  
 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경감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4장 개방주차장

제16조(개방주차장의 지정) 구청장  
 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따라 주차난 해소가 필요  
 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  
 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주  
 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방주차장 지  
 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주·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  
 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것 다  
 만,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  
 간 무료 제공할 경우에는 보조

<신 설>

<신 설>

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제18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 시설 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

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5. 관리주체 부담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신 설>

제21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중에서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신 설>

제22조(보조금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2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 ①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신 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24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

<신 설>

<신 설>

제16조 ~ 제22조 (생 략)

<별표 4>

주차장설치 규모별 보조범위(제16조  
관련)

주 차 장 의 규 모	보 조 범 위	
	개인부지인 경 우	국·공유지 점용의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 조립	설치비용의 3분의 1 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 1 이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 1 이내

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효율적  
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  
다.

제5장 보칙

제26조 ~ 제32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별표 4>

주차장설치 규모별 보조범위(제26조  
관련)

주 차 장 의 규 모	보 조 범 위	
	개인부지인 경 우	국·공유지 점용의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 조립	설치비용의 3분의 1 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 1 이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 1 이내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86호

## 공 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등록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1	(민원사무전용) 울산광역시복구 농소3동장인	복합인증기 교체	2022. 2. 10. (2022. 2. 10.)		

## 2. 폐기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영	비고
1	(민원사무전용) 울산광역시복구 농소3동장인	복합인증기 교체	2022. 2. 1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95호

#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안 제2조)

- 상위법령에 감면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개정(안 제4조)

-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 관련 근거법령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 3년 → 5년

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6조)

- 고지서 1장당 150원 → 500원, 500원 → 1,000원

라.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안 제7조) : 건축물 → 건축물 및 주택

마. 상위법령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8조, 제13조)

### 3. 관련법령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78조의3, 제92조의2, 제177조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부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부과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521, 팩스번호 : 052)241-7509
- 3) 전자우편(E-mail) : you33@korea.kr

###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고시 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55조제2항제1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7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조사·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p>
<p>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p>	<p>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p> <p>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p> <p>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p>
<p>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p>	<p>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p>

현 행	개 정 안
<p>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u>150원</u></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u>500원</u></p> <p>② (생략)</p>	<p>공제) ① ----- ----- -----.</p> <p>1. ----- ----- -----</p> <p>----- <u>500원</u></p> <p>2. ----- ----- -----</p> <p>----- <u>1,0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u>건축물</u>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p>	<p>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 ----- ----- ----- -----<u>건축물 및 주택</u>----- -----.</p>
<p>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 <u>13조제5항에 따른</u>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8조(감면 제외대상) ----- ----- <u>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p>
<p>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u>조사·결정</u>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u>통지</u>하여야 한다.</p>	<p>제<u>13</u>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확인</u>----- ----- -----<u>안내</u>----- -----.</p>

## 관계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 12. 28.>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생략)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

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생략)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생략)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 ⑪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

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 2. (생략)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⑱ (생략)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98호

# 울산광역시 복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정원 관련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정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 정원문화 발굴·진흥 활동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물품 등 지원

○ 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구성안 재정비(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 심의대상 :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추가

· 당연직 위원 : 복구청장, 정원업무 담당국장

3. 근거법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052-241-7957
- 팩스번호 : 052-241-7939
- E-mail : namjh1210@korea.kr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index.do>)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정원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나. 정원 관련 전문가
- 다.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 관계자
- 라. 마을정원사
-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lt;신설&gt;</p>	<p>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①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p> <p>1.·2. (생략)</p> <p>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5조(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16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u>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1.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u></p> <p>2. <u>정원 관련 전문가</u></p> <p>3. <u>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 관계자</u></p> <p>4. <u>마을정원사</u></p> <p>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p>	<p>제16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당연직 위원</u></p> <p>가. <u>부구청장</u></p> <p>나. <u>정원업무 담당 국장</u></p> <p>2. <u>위촉직 위원</u></p> <p>가.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u></p>

현 행	개 정 안
<u>인정하는 사람</u>	<u>나. 정원 관련 전문가</u> <u>다.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 관계자</u> <u>라. 마을정원사</u> <u>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사람</u>

## 관계법령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정원의 운영·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8(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